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81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임오경・이기헌・강유정

한병도 · 김재원 · 민병덕

서영교 · 김현정 · 박수현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2001년 6월부터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획득에 체육기금의 출자 근거 및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의 활용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한편 본 사업의 시행취지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국가 체육재정 기여도 등 그 중요

성을 감안한다면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 신설을 통한 발행사업의 안정적 위탁운영이 필요함.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			
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u>제5호</u>	6 <u>제6호</u>		
<u>까지의</u> 규정에 따른 출자 등	까지의		
에 따른 수익금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③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4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			
정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			
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			
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			

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권 발행 사업